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3. 30.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門委員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4호로 2020년 3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치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함.

3.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가. 2020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증감률(%)
합 계	680,800,895	670,292,925	10,507,970	1.57
일반회계	652,077,928	641,569,958	10,507,970	1.63
특별회계	28,722,967	28,722,967	0	0
주 차 장	27,601,217	27,601,217	0	0
건축안전	660,480	660,480	0	0
의료급여	461,270	461,270	0	0

4. 편성내역

가. 일반회계 ----- 10,507,970천원

1) 세입총괄표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비 고
계	652,077,928	641,569,958	10,507,970	
지방세 수입	158,577,661	158,577,661	0	
보통세	157,890,549	157,890,549	0	
지난년도 수입	687,112	687,112	0	
세외수입	68,715,116	68,715,116	0	
경 상 적 세외수입	57,250,839	57,250,839	0	
임 시 적 세외수입	11,464,277	11,464,277	0	
지방교부세	11,241,000	11,241,000	0	
조정교부금	86,372,435	86,372,435	0	
보 조 금	279,644,731	277,572,761	2,071,970	
국고 보조금	161,661,434	160,435,893	1,225,541	-긴급복지 지원 888(증223) -가정양육수당 지원 4,796 (증354)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674(증649)
시비 보조금	117,983,297	117,136,868	846,429	-긴급복지 지원 444(증112) -가정양육수당 지원 4,103 (증303)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449(증43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526,985	39,090,985	8,436,000	
순 세 계 잉 여 금	47,526,985	39,090,985	8,436,000	

2) 세출예산 편성 내역

● 주요사업 추경예산 편성액----- 10,507,970천원

▶ 코로나19 확산 예방 물품 구입 및 방역 등 (기획예산과)	520,000천원
▶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기획예산과)	46,400천원
▶ 예비비 (기획예산과)	3,129,050천원
▶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일자리경제과)	400,000천원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업체 지원 (일자리경제과)	150,000천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일자리경제과)	3,081,000천원
▶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복지정책과)	1,296,944천원
▶ 코로나19 대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존 (복지정책과)	41,000천원
▶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 (복지정책과)	1,564,000천원
▶ 긴급복지 지원 (복지정책과)	445,320천원
▶ 코로나19 대응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보전 (보육지원과)	119,336천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지원과)	787,576천원
▶ 코로나19 대응 주야간보호센터 운영비 보전 (어르신복지과)	99,046천원
▶ 여의나루역 보행환경 개선 (가로경관과)	30,000천원
▶ 공동주택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지원 (주택과)	46,966천원
▶ 문자서비스 이용료 (홍보미디어과)	30,000천원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 (보건지원과)	132,575천원
▶ 방역소독 (보건지원과)	82,620천원
▶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지원 (의약과)	50,000천원
▶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방역 (의약과)	20,097천원

나. 부서별 세출예산

1) 총괄(일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총 계	680,800,895	670,292,925	10,507,970	1.57
일반회계	652,077,928	641,569,958	10,507,970	1.64
특별회계	28,722,967	28,722,967	0	0

2) 일반회계

부 서 별		최종예산	기정액	증감액 [추경편성액]	증감률(%)
총 계		652,077,928	641,569,958	10,507,970	1.64
감 사 담당관	감 사 담당관	381,790	381,790	0	0
기 획 재정국	기 획 예산과	6,205,137	2,509,647	3,695,490	147.25
	일 자 리 경제과	12,274,181	8,643,181	3,631,000	42.01
	재 무 과	597,744	597,744	0	0
	징 수 과	900,346	900,346	0	0
	부 과 과	1,016,720	1,016,720	0	0
미 래비전 추 진 단	비 전 협력과	859,048	859,048	0	0
	미 래 교육과	31,320,806	31,320,806	0	0
	사 회 적 경제과	2,642,966	2,642,966	0	0

부 서 별		최종예산	기정액	증감액 [추경편성액]	증감률[%]
복지국	복지정책과	8,462,114	6,678,850	1,783,264	26.7
	사회복지	73,232,714	73,232,714	0	0
	보육지원	118,381,154	117,474,242	906,912	0.77
	아동청소년복지	11,016,848	11,016,848	0	0
	어르신복지	110,505,934	110,406,888	99,046	0.09
생활환경국	가정관리과	2,929,448	2,899,448	30,000	1.03
	청소과	45,080,204	45,080,204	0	0
	환경과	3,679,115	3,679,115	0	0
	푸도시	10,070,988	10,070,988	0	0
안전국	도안시과	3,873,855	3,873,855	0	0
	도로과	11,885,552	11,885,552	0	0
	치수과	4,837,649	4,837,649	0	0
	교통행정과	3,320,164	3,320,164	0	0
	주문화과	45,450	45,450	0	0
도시국	주택과	801,883	754,917	46,966	6.22
	도시계획	241,449	241,449	0	0
	도시재생	1,734,681	1,734,681	0	0
	건축과	1,128,779	1,128,779	0	0
	부동산정보	503,994	503,994	0	0
행정지원국	총무과	110,684,838	110,684,838	0	0
	홍보미디어	4,988,947	4,958,947	30,000	0.60
	자치행정	12,838,073	12,838,073	0	0
	행문체육	22,358,347	22,358,347	0	0
	민여권	1,317,175	1,317,175	0	0

부 서 별		최종예산	기정액	증감액 [추경편성액]	증감률[%]
보 건 소	보건지원과	11,850,530	11,635,335	215,195	1.85
	건강증진과	13,838,243	13,838,243	0	0
	의약과	1,382,412	1,312,315	70,097	5.34
	위생과	435,630	435,630	0	0

(단위 : 천원)

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 일반회계

【기획재정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내 역
총 계	20,994,128	13,667,638	7,326,490	53.6% 증
기 획 예산과	6,205,137	2,509,647	3,695,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예방 물품 구입 520,000 및 방역 등 ◦ 기관공통 특근매식비 등 46,400 ◦ 일반 예비비 3,129,090
일자리 경제과	12,274,181	8,643,181	3,63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400,000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업체 지원 150,000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81,000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내 역
총 계	152,187,380	152,157,380	30,000	0.02% 증
홍보전산과	4,988,947	4,958,947	30,000	◦ 문자서비스 이용료 30,000

【보 건 소】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내 역
총 계	27,506,815	27,221,523	285,292	1.05% 증
보건지원과	11,850,530	11,635,335	215,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소독 82,620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 132,575
의 약 과	1,382,412	1,312,315	70,0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지원 50,000 ◦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방역 20,097

【복지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내 역
총 계	321,598,764	318,809,542	2,789,222	0.87% 증
복 지 정 책 과	8,462,114	6,678,850	1,783,2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1,337,944 ◦ 긴급복지 445,320
보 육 지 원 과	118,381,154	117,474,242	906,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 119,336 ◦ 가정 양육수당 지원 787,576
어 르 신 복 지 과	110,505,934	110,406,888	99,0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 99,046

【생활환경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내 역
총 계	61,759,755	61,729,755	30,000	0.05% 증
가 로 경 관 과	2,929,448	2,899,448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나루역 보행환경개선 30,000

【도시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내 역
총 계	4,410,786	4,363,820	46,966	1.08% 증
주 택 과	801,883	754,917	46,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주택과) 46,966

5. 검토내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702억 9,300만원의 1.57%인 105억 797만원이
증액된 6,808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5억 7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 증감액은 총 105억 797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105억
797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내역 : 105억 797만원
 -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액 20억 7,200만원
 - 순세계 잉여금 84억 3,600만원

- 세출 증감액은 총 105억 797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105억
797만원임.

-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82억 5,100만원에서 76억 4,100만원이 증액된 2,358억
9,200만원으로 증감률은 3.35%임.

주요 편성내용으로

○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6억 6,800만원의 53.6%인 73억 2,600만원이 증액된
209억 9,400만원으로

◦ 주요 증가 요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방물품 및 방역 등 5억 2,000만원
일반 예비비 31억 2,80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위한 4억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1억 5,000만원이 편성됨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21억 5,700만원의 0.02%인 3,000만원이 증액된
1521억 8,700만원으로

◦ 주요 증가 요인은

코로나 19 관련 문자서비스 사용료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2억 2,100만원의 1.05%인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275억 600만원이 편성됨.

◦ 주요 증가 요인은

코로나19 방역소독비 8,300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비 1억 3,200만원,
이동형 음압기 구입 구입 4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지원비 5,000만원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방역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28억 6,700만원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4,375억 8,900만원 대비 0.65% 증가한
4,404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으로

○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88억 1,000만원 대비 0.87%인
27억 8,900원 증액된 3,215억 9,900만원이 편성됨

◦ 주요 증가 요인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13억 3,800만원,
긴급복지 4억 4,500만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1,900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7억 8,800만원,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 지원 9,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 기정예산 617억 3,000만원 대비 0.05%인 3,000만원 증액된 617억 6,000만원이 편성됨.
-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여의나루역 보행환경개선 3,000만원 증액 편성됨.

○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 기정예산 43억 6,400만원 대비 1.08%인 4천 700만원 증액된 44억 1,100만원이 편성됨.
- 주요 증가 요인은
공동주택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지원을 위한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종합 검토결과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추경요건에 부합한다 할 것임.

- 금회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교부금, 2019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 우리 구의 금번 세출 추경은 「① 세계 위기 등에 직면한 틈새 계층 생활안정 지원 ②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 ③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예방 활동 지원」 3대 분야에 집중되어 구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본 추경의 효과는 실제 수혜자에게 지원될 때 발현된다는 점에서 적시성 있는 사업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제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영등포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3. 30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門委員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5호로 2020년 3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차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신규 편성하여상공인들의 자금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요구 내역
 - 변경 대상: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 변경 요구액: 30억 8,100만원 이차보전금, 융자금 증액
 - 기금의 용도: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4. 검토의견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2/10 이상 금액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써,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차 보전금 및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총 조성액은 124억 9,100만원이며, 당초 2020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기금 운용액은 98억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이차보전금 8,1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융자금 50억원을 80억원으로 30억원 증액한 반면, 전입금 66억 3,100만원을 97억 1,200만원으로 30억 8,1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서, 전체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발생한 것임.
- 검토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민간 경제 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등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구민피해를 조기에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2(융자계획수립 및 추가융자)

① 구청장은 매년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융자 할 수 있다.